

## 화순군 온천수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	
번호	

### 1. 제안이유

- 공동급수권자의 자격요건이 명시되지 않아 공동급수 할 수 있는 능력, 역할이 미비하여 공동급수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함.
- 급수공사 신청·승인을 군수에게 득 하도록 하는 등 온천수 공급에 따른 행정절차가 세약이 됨.
- 온천수 급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부적격 업체 등의 시공으로 부실, 하자공사 발생할 우려가 됨으로 급수공사 자격을 명시코자 함.

### 2. 주요골자

- 온천공 소유권을 가지고 공동급수시설을 갖춘 단체, 법인 또는 개인에게 공동급수 권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, 온천공소유자등 자본이 열악하여 공동급수 추진이 어려움을 감안 군수가 직접 공동급수권자가 될 수 있도록 명시함.(안 제3조 1항)
- 이용 허가자는 온천수 급수공사를 공동급수권자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공동급수권자 책임하에 공사를 시행토록 함으로써 절차의 간소함 도모(안 제9조 1항)
- 온천수 급수공사 대행업체를 화순군 상수도 급수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대행업체로 명시함.(안 제9조 2항)

##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의 제목중 “공급”을 “공급 및 공급자 자격”으로 하고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온천수의 공급은 온천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공 소유자와 협의하여 군수가 직접 공동급수 하거나 온천공소유권을 가지고 공동급수 시설(채수장치, 배수장치, 급수 장치등)을 갖춘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동급수하게 할 수 있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조(급수공사의 신청 및 설치) ①급수공사를 하고자하는 자는 미리 공동급수권자에게 신청하여야하며, 공동급수권자는 급수공사 신청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- ②급수공사는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 허가를 받은자만 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온천수의 공급) ① 온천수의 공급은 온천법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공동급수 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(2) (생략)</p>	<p>제3조(온천수의 공급방식 및 공급자 자격)</p> <p>① 온천수의 공급은 온천법(이하“법”이라)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공소유자와 협의하여 군수가 직접 공동 급수 하거나 온천공소유권을 가지고 공동 급수시설(채수장치, 배수장치, 급수 장치 등)을 갖춘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동급수 하게 할 수 있다</p>
<p>제9조(급수공사의 승인)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 <p>② 군수는 급수를 결정할 때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③ 급수전을 분리시켜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 별개의 수도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 <p>④ 제1항 및 제3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서는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. 다만, 철거공사는 제외한다.</p> <p>⑤ 제4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(급수공사의 신청 및 설치)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공동급수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, 공동급수권자는 급수공사 신청 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급수공사는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 허가를 받은자만 할 수 있다.</p>